



...  
빈칸채우기를 통한 핵심요약정리

장정훈 경찰학  
**심화이론**  
**빈칸노트**

2024년 2차 경찰채용 대비

StudyNotes

---

##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6

---

제1절 경찰개념 .....	6
제2절 경찰의 임무 .....	10
제3절 경찰의 관할 .....	1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	14
제5절 경찰윤리 .....	17
제6절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	20
제7절 경찰윤리강령 .....	21
제8절 적극행정 .....	30
제9절 범죄학 .....	32
제10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	36

---

##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 38

---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	38
제2절 일제강점기 .....	40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	40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41
제5절 정부수립 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	41
제6절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 .....	42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43

---

## CHAPTER 03 경찰행정법 44

---

제1절 행정법의 기초이론 .....	44
제2절 경찰조직법 .....	48
제3절 「경찰공무원법」 .....	57
제4절 경찰작용법 .....	77

---

## CHAPTER 04 경찰행정학 106

---

제1절 정책결정모델 .....	106
제2절 경찰조직관리 .....	107
제3절 인사관리 .....	110
제4절 경찰예산관리 .....	113
제5절 장비관리 .....	115
제6절 보안관리 .....	116
제7절 문서관리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120
제8절 경찰홍보 .....	121
제9절 경찰통제 .....	123

---

## CHAPTER 05 분야별 경찰활동 128

---

제1절 생활안전경찰 .....	128
제2절 수사경찰 .....	143
제3절 경비경찰 .....	154
제4절 교통경찰 .....	165
제5절 정보경찰 .....	176
제6절 안보경찰 .....	181
제7절 외사경찰 .....	190

---

## 부 록

---

경찰학 위원회 총정리 .....	200
-------------------	-----

# 심화이론 빈칸노트

---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

chapter 03 경찰행정법

chapter 04 경찰행정학

chapter 05 분야별 경찰활동

# 경찰학의 기초이론

## 제1절 경찰개념

###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1) 대륙법계 경찰개념

고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 정치, 특히 가장 이상적 상태인 헌법 의미
중세	① 14C 말 <sup>1)</sup> 경찰은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 의미 * 14C '경찰권' 개념은 프랑스어 '라폴리스(la police)'라는 단어로 대표되는데, 초기에는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의 의미'로, 나중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② <sup>2)</sup> 경찰개념이 15C 말 <sup>3)</sup> 로 이어져, 국가행정전반 의미 ③ <sup>4)</sup> 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행정 권한 <sup>5)</sup> (포함 / 제외) 한 일체의 국가행정
경찰 국가	① <sup>6)</sup> 세기 외교·군사·재정·사법 등과 분리되어 <sup>7)</sup> 뿐만 아니라 <sup>8)</sup> 을 직접 다루는 <sup>9)</sup> 만 의미 ② 1648년 <sup>10)</sup> - 사법행정이 경찰로부터 분리
법치 국가	① <sup>11)</sup> 세기 후반 - <sup>12)</sup> 을 사상적 기초, 내무행정 중 <sup>13)</sup> 행정 의미 ② 요한 슈테판 뤼터(Johann Stephan Pütter) -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 방지하는 것,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 아니다.
	<sup>14)</sup>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공중 또는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강구하는 것이 경찰책무
	<sup>15)</sup>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 안전 유지하는 것 임무
	<sup>16)</sup>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 확보함이 목적 - 경찰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으나, 위생사무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
	<sup>17)</sup>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 안녕과 질서 위협하는 위험방지 위하여 현행법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 조치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sup>18)</sup> 경찰임무는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된다는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 마련 - 경찰작용의 목적 <sup>19)</sup> (확대 / 축소) * 승전기념비 전망확보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sup>20)</sup> (O / X)	
2차 대전이후	<sup>21)</sup> 협의의 행정경찰 X, 보안경찰 O

(2) 영·미법계 경찰개념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 위임받아 시민위해 법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sup>22)</sup> [ ] 및 <sup>23)</sup> [ ] 중심으로 형성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비교

구 분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권의 기초	<sup>24)</sup> [ ]	<sup>25)</sup> [ ]
경찰의 개념	<sup>26)</sup> [ ] 기준 <sup>27)</sup> [ ] 무엇인가	<sup>28)</sup> [ ] 기준 <sup>29)</sup> [ ] 무엇인가
시민 관계	경찰권과 시민권의 <sup>30)</sup> [ ]	경찰권과 시민권의 동반자 관계
경찰의 사명	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중점 ②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임무 <sup>31)</sup> (O/X)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중점 ②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임무 <sup>32)</sup> (O/X)
축소, 확대	경찰권 발동범위 축소과정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경찰개념 발전·확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sup>33)</sup> (O/X)	구분 <sup>34)</sup> (O/X)

**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형식적 의미 경찰	경찰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sup>35)</sup> [ ] 상 <sup>36)</sup> [ ] 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달성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경찰활동
실질적 의미 경찰	① 사회공공 안녕·질서 유지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 ② <sup>37)</sup> [ ] 의 <sup>38)</sup> [ ] 에서 유래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① <sup>39)</sup> [ ] 중심	① <sup>44)</sup> [ ] 중심 - 타인의 자유와 행동 제한·규제하는 작용은 경찰임무에 포함되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 경찰 <sup>45)</sup> (O/X)
② <sup>40)</sup> [ ] 적 개념 = 실무상 개념 = 제도상 개념	② <sup>46)</sup> [ ] . [ ] 개념
③ 형식적 의미 경찰개념 입각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 <sup>41)</sup> (있다/없다) .	③ <sup>47)</sup> (소극목적 / 적극목적) 적 작용
④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활동 할 수 <sup>42)</sup> (있다/없다) .	④ <sup>48)</sup> (국가목적 / 사회목적) 적 작용
⑤ 사법경찰, 정보경찰, 안보(대공)경찰, 경찰서비스활동 - <sup>43)</sup> (형식적 의미 / 실질적 의미)	⑤ <sup>49)</sup> (권력적 / 비권력적) 작용
	⑥ 경찰 아닌 다른 행정기관 작용은 실질적 의미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sup>50)</sup> (있다/없다)

- ① 형식적 의미 경찰 ≠ 실질적 의미 경찰
- ② 실질적 의미 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sup>51)</sup> (O/X)
- ③ 일반행정기관도 '경찰기능' 담당한다고 할 때 '경찰기능' - <sup>52)</sup> [ ] 라는 작용 측면에서 바라본 <sup>53)</sup> [ ] 의미 경찰개념

### 3 경찰의 분류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sup>54)</sup>에 따른 구분

행정경찰	사법경찰
① <sup>55)</sup> 사태에 대한 작용	① <sup>57)</sup> 사태에 대한 작용
② 해당 주무부서장의 지휘·감독 받음	② 수사부서장의 지휘·감독 받음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각종 행정법규에 근거	③ 「형사소송법」에 근거
④ <sup>56)</sup> (형식적 /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	④ <sup>58)</sup> (형식적 /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최초 구분 - <sup>59)</sup>
- 우리나라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 <sup>60)</sup> (O / X)  
 -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 모두 담당 <sup>61)</sup> (O / X)
- 행정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분류

#### (2) 보안경찰(치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sup>62)</sup>에 따른 구분

보안경찰	① 사회공공 안녕·질서 유지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 동반하지 않고 오직 경찰작용만으로 하나의 독립행정부문 형성 ②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①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 보호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 작용으로서 사회공공 안녕과 질서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② 산업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철도경찰, 경제경찰, 위생경찰 등

\* 비경찰화

<sup>63)</sup> 이외의 산림경찰 등 <sup>64)</sup>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

####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sup>65)</sup>에 따른 구분

예방경찰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 있는 정신착란자 및 주취자 보호조치, 총포·화약류 취급제한, 순찰활동 등
진압경찰	범죄의 제지·진압, 범죄수사, 피의자 체포,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등

## 제2절 경찰의 임무

### 1 실정법상 경찰 임무

경찰의 임무(「국자법」 제3조)	직무의 범위(「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sup>1)</sup>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sup>2)</sup> 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sup>3)</sup>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sup>4)</sup>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sup>5)</sup> 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sup>6)</sup>

\* 우리나라는 <sup>7)</sup> (대륙법계 / 영미법계) 영향 받아 범죄수사가 경찰임무로 규정

### 2 경찰의 사무

(1) 국가경찰사무 : 「국자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임무수행 위한 사무. 단 자치경찰사무는 제외

#### (2) 자치경찰사무

- ①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②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③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 「형법」상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sup>8)</sup>에 관한 범죄
-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sup>9)</sup> 로 정한다.

\* 수사사무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sup>10)</sup> 으로 정한다.

제3절 경찰의 관할

1)	의의	①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 범위 ② 경찰권 발동범위의 설정기능 - 조직법적 임무규정
	특징	① 「국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동일한 사무관할 규정 ② 우리나라는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직법적인 임무규정 포함
인적 관할		① 광의(협의 X)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② 경찰권발동의 제한 - 2) ③ 외교관과 외교신서사, 영사신서사 -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당하지 아니함 3) (O / X) ④ 영사관원 -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당하지 아니함 4) (O / X)
지역 관할	국회	① 5) 에게 국회경호권한 있고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 ② 국회의장은 국회경호 위하여 필요시 6) 의 7) 언어 정부에게 필요한 경찰공무원 파견요구가능 ③ 파견된 경찰은 8) 지휘받아 회의장건물 9) 에서 경호 ④ 국회안에 현행범 있을 때는 경찰은 10) 받아야 함.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11) 체포불가
	법정 내부	① 재판장은 법정서 질서유지 위하여 필요할 때는 개정전후 불문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 파견 요구가능 ② 파견된 경찰은 법정내외 질서유지에 관하여 12) 의 지휘 받음
	치외 법권 영역	① 외교공관이나 외교관 사택, 승용차·보트·비행기 등도 불가침 ② 외교사절 요구나 동의 없는 한, 경찰은 직무수행 이유로 함부로 출입 X ③ 13) 나 14) 발생처럼 긴급한 경우 외교사절 동의 없이도 공관에 출입가능
	미군영 내	① 한국경찰은 15) 한 경우와 16) 를 범하고 도주하는 17) 을 추적시 미군의 시설 및 구역 안에서 범인체포가 가능 ② 대한민국은 미군당국 동의 없으면 시설·구역 내에서 사람·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 불문 미국 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 불가



##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 침해하는 것

#### 제2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제3조(설치)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sup>1)</sup>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장 1명 포함 <sup>2)</sup> 위원으로 구성.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sup>3)</sup> 초과금지

- ② 위원장은 <sup>4)</sup>,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
-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④ 위촉 위원은 인권 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있고 다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sup>5)</sup>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sup>6)</sup>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에서 인권 분야 <sup>7)</sup> 년 이상 활동한 경력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받은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sup>8)</sup>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사무관계자 및 정당의 당원
- ② 위촉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sup>9)</sup>, 위원장은 연임 <sup>10)</sup>, 위촉 위원은 <sup>11)</sup> 만 연임가능

- ② 위촉 위원에 결원 생긴 경우 새로 위촉가능,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sup>12)</sup> 부터 기산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위원회 의견 들어 위원 해촉가능

1. 입건 전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또는 경찰 인사에 관여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관련 비위사실 있는 경우
2. 위원회 명예 실추시키거나 품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sup>13)</sup> 회 불참 등 직무태만
4.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하다고 의사 밝힌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5절 경찰윤리

### 1 윤리교육의 목적

1)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2)	실무에서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것
3)	가장 중요한 목적.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 2 경찰의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4)	전문가가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5)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 맥락 보지 못하는 것
6)	전문직 되는데 장기간 교육과 비용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 되는 기회 차단
7)	전문직들은 그들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익보다는 사익 위해서만 이용

### 3 경찰의 일탈

#### (1)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8)

부패에 해당<sup>9)</sup> 하는 / 하지 않는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 10) - 대부분 경찰들은 작은 호의와 뇌물 구별할 수 있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으로 '관념적 가설'에 불과

\* 11) - 일부 경찰관이 이 이론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지만,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 (2) 경찰의 부정부패

### 1) 부정부패의 정의

12)	사적인 이익 고려하여 권위남용
13)	고객이 위험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
14)	보수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 발생

### 2) 부패의 용인가능성 여부에 따른 구분

15)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경제가 어려운데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16)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
17)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정치권에 대한 후원금, 적은 액수의 호의표시나 선물 또는 경찰관에게 주민들이 제공하는 음료수나 과일)

### 3) 부정부패의 원인

전체사회 가설	① 18) ②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부패 원인 ③ 19) 이론과 유사
구조원인 가설	① 20) ②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③ 부패관행이 경찰조직 내부에서 21) 으로 받아들여짐 ④ 부패 원인 - 22) 조직의 체계적 원인 / 개인적 결함
씩은사과 가설	① 일부 부패가능성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유입됨으로써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② 부패 원인 - 23) 조직의 체계적 원인 / 개인적 결함

① '봉급 제외하고 깨끗한 돈이라는 건 없다' - 패트릭 머피(전 뉴욕시경 국장)

② '경찰인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윌슨(O. W. Wilson)

### 4)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의의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 언론매체에 공표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 (클라히니히)	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공표하기 전 자신의 이견 표시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 다 사용 ② 어느 정도(높은 정도 X) 성공가능성

## 제6절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 1 공정한 접근보장

의의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 → 경찰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 허용
위반 사례	① A지역과 B지역 순찰근무 부여받은 경찰이 B지역에 친척 산다는 이유로 순찰시간 대부분 할애 ② 음주단속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 경우 ③ 경찰관이 순찰근무 중 가난한 동네는 가지 않고 부자동네만 순찰

### 2 공공의 신뢰

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행사 제한하고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에게 맡겼다는 것 인식하고 경찰은 거기에 부응하는 것
내용	① 지갑 도난당한 후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심스럽지만, 직접 지갑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범인 체포 ② A순경은 강도범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 추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 위반 ③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서 권총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 3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safety and security)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 달성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  
 예)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중인 경찰이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폭주족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

### 4 역할한계와 팀워크(teamwork)

- ① 경찰관이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
- ② 경찰관이 사건을 취급하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단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

###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의의	경찰관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 위해 노력 → 업무수행시 사사로운 개인감정에 치우치면 안 됨
예	① 절도범 검거하였는데, 과거 도둑맞은 경험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 ②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 경험한 경찰관이 가정문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

## 제 7 절 경찰윤리강령

### 1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실행가능성 문제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며, 지나친 이상추구의 성격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
1)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2) 야기
3)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됨
4)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우선순위 미결정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결정 기준이 못됨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강령이 무슨 무슨 행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함

### 2 우리나라

(1) 1945년 국립경찰탄생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 - 영미법계의 영향 받은 5) 와 6)

(2) 윤리강령 제정과정

7) (1966) → 8) (1980) → 9) (1991) → 10) (1998)

(3) 경찰헌장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11) 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듯하게 12) 하는 13) 경찰
1. 우리는 14) 의 이름으로 진실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15) 하지 않는 16) 경찰
1. 우리는 국민의 17) 를 바탕으로 오직 18) 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19) 경찰
1. 우리는 건전한 20) 위에 전문지식 같고 닦아 맡은 바 일을 21) 하게 수행하는 22) 경찰
1. 우리는 23) 과 24)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25) 하게 생활하는 26) 경찰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하였을 때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27) 과 28) .

② ①에 따라 지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 반복될 때는 즉시 <sup>29)</sup> 과 <sup>30)</sup> .

③ 상담요청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변경 필요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다만, 지시내용 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한 상급자 스스로 지시를 취소·변경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sup>31)</sup> .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sup>32)</sup> 에게 상담을 요청 <sup>33)</sup> .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① 공무원은 수사·단속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받거나 청탁받은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sup>34)</sup> 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sup>35)</sup> .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sup>36)</sup> 을 주거나 제3자에게 <sup>37)</sup> 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sup>38)</sup> 또는 매 회계연도에 <sup>39)</sup>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금품등은 수수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내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sup>40)</sup> )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sup>60)</sup> 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sup>61)</sup> 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sup>62)</sup> 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 음식물, 경조사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sup>63)</sup> 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은 <sup>64)</sup> 만원(명절기간 중에는 <sup>65)</sup> 만원)

3. 사적 거래(증여는 <sup>66)</sup>)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sup>67)</sup>에게 배포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up>68)</sup>에게 지체 없이 <sup>69)</sup>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약속이나 의사표시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약속이나 의사표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sup>70)</sup>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up>71)</sup>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신고받거나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 ①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81)
- ②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82)
- ③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83)
- ④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 - 84)
- 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85)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3. “고위공직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아. 86)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87) 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88) 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sup>89)</sup>  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 <sup>90)</sup> )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sup>91)</sup>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미신고시 <sup>92)</sup>  이하의 과태료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sup>93)</sup>  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 미신고시 <sup>94)</sup>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sup>95)</sup>  이내, 매수 후 등기 완료한 날부터 <sup>96)</sup>  이내 하여야 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 개시하기 전 <sup>97)</sup>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개시한 날부터 <sup>98)</sup>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sup>99)</sup>  행위의 내용

▶ 미제출시 <sup>100)</sup>  이하의 과태료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와 다음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sup>101)</sup>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1.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하는 행위.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 위반시 <sup>102)</sup>  이하의 과태료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sup>103)</sup>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sup>104)</sup> 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sup>105)</sup> 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사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위반시 <sup>106)</sup> 이하의 과태료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sup>107)</sup>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제1항 제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sup>108)</sup> 이하의 과태료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sup>109)</sup>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sup>110)</sup>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sup>111)</sup> (O/X) )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sup>112)</sup> (O/X) )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sup>113)</sup> (O/X)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sup>114)</sup>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 <sup>115)</sup> 이하의 과태료

## 제8절 적극행정

### 1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sup>1)</sup> 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sup>2)</sup> 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sup>3)</sup>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